

【11】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12.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
-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함.
-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및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유료화 할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으로 효율적 관리유지.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자는 위생적관리를 하도록 책무부여(안 제3조)
- 공중화장실내 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10조)
- 공중화장실설치 및 유지관리에 부적합한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 (안 제14조, 제15조)
- 일정시설 기준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유료화 (안 제16조)
- 시설개선명령 미이행 및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부과 (안 제18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

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 3 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 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문화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2.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 시설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5.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6. 기타 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공중 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 2 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 5 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 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 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기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 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 6 조(기타시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할 경우 신체장애인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시설의 유지 관리

제 7 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8 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 (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 10 조(유지. 관리기준)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등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이상 도색할 것.

제 11 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 관리 상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 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 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 장 시설 개선 명령

제 13 조(시설 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리.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 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개선명령)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청결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제 15 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 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 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 16 조(유료화장실 승인)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 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 할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 ③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 17 조(준수사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할 것.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 6 장 과태료 부과 징수등

- 제 18 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지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 4 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 부터 유료 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5 조(다른조례의개정)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 제2호, 3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8조를 삭제한다.
3. (별표1)유료변소의 설치기준, (별표2)유료변소의 유지관리기준, (별지1호서식)유료변소 승인신청서 및 (별지2호서식)유료변소 승인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회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사항	근거조항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제5조			
가. 제5조 제1, 2, 3, 4호 위반		20	40	60
나. 제5조 제5, 6, 7호 위반		10	20	30
2.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히한 때	제8조	10	20	30
3.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9조	10	20	30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제10조	20	30	50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7조 (제2호내지제4호)	20	30	50

【별지 제1호 서식임면】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관리번호	□ □ - □ □ □		소재지								
지역구분			설치			책임	소속				
관리주체			년도			공무원	직위·직명				
관리인	(전화 :)					성명					
규모	대지	건평	대변기		소변기		변소의 형태			사용료	
	(㎡)	(㎡)	남	여	대인	소인	수세식	수거식	무료	유료	
			개		개						
용품	세면기	에타이월	환풍기	화장지 (자동판매기)		비누 (액체비누)		수건		약품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개	대	대								
시설관리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전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전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전원)		
상황											

【별지 제1호 서식문면】

약 도	
비 고	<p><input type="radio"/> 관리번호 : 군단위 읍면별 일련번호 부여</p> <p><input type="radio"/> 지역구분 : ① 터미널 ② 시장 ③ 약 ④ 공원 ⑤ 유원지 ⑥ 문화재 ⑦ 도로변휴게소 ⑧ 시가지 ⑨ 주유소 ⑩ 항·포구 ⑪ 선착장 ⑫ 운동장 ⑬ 기타</p> <p><input type="radio"/> 관리주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공단, ○○조합, ○○법인회, 개인 등)</p>

【별지 제2호 서식】

공 중 화 장 실 개 선 명령서			명령서 번호 제 호
수 명 인	화장실소재지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개 선 명령 사 항			
개 선 이 행 기 간	년 월 일 까지		
양주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명령을 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공 중 화 장 실 개 선 명령 이 행 서		처 리 기 간 5일
수 명 인	화장실소재지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개 선 명령 사 항		
개 선 이 행 사 항		
개 선 이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였기에 이행사항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서명 또는 인)</p>		
양 주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유료화장실승인신청서						처리기한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시설현황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관리주체	
	전담 관리인		(전화번호:)			설치년도	.
	다른 법령에 의한 화장실 설치 의무						<input type="checkbox"/> 유
시설내역	면적 규모	㎡		이용인원(일평균)		명	
	대변기	남	여	소변기		개	
		개	개				
	편의시설 용품	세면기	에어타월기	환풍기	화장지	비누	약품
		대	대	대	유	유	유
1회사용료		원					
<p>양주군공증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신청합니다.</p>							
<p>신청인 : (인) (날인 또는 서명)</p>							
<p>양주군수 국회</p>							
<input type="checkbox"/> 수수료없음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료화장실 운영계획서 (운영시간, 사용요금 등 명시) 1부 2. 화장실의 설치장소 및 내부구조도 1부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승인 제 호				
유료화장실승인서				
대 표 자	상호 (명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담 관리인	(전화번호 :)			
설 치 장 소				
시 설 내 역	대변기		소변기	
	남	여	개	
	개	개		
	세면기	에어타월기		환풍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양주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변경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양 주 관 수

【별지제7호서식】

(개인등지시)

제 호 과태료납부등지시		
위반사항 :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 조 제 항		
남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양주군수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등지시		
위반사항 :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 조 제 항		
남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양주군수

(근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등지시		
위반사항 :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 조 제 항		
남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임수하였기
알리드립니다.

년 월 일

양주군수 귀하

(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등지시		
위반사항 :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 조 제 항		
남부의무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